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03
----------	-------

발의연월일 : 2025. 8. 21.

발 의 자 : 최혁진 · 강준형 · 김준형
문진석 · 민형배 · 박상혁
박정현 · 양문석 · 위성곤
이해민 · 전종덕 · 정혜경
허성무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하여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의 경우 경찰·소방공무원과 달리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경찰·소방공무원이 고위험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그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경찰청장·소방청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으로 정하고, 경찰·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으로 정하여 그 희생과 공헌을 충분히 기리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라목 전단 중 “30년”을 “10년”으로, “사람(경찰·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의2 중 “제1항제4호라목의”를 “제1항제1호거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의”로 한다.

거. 경찰·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경찰청장·소방청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타목 및 파목에”를 “타목, 파목 및 거목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계인은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거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

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 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 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 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 ----- ----- --. ----- ----- -----.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 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가. ~ 하. (생 략)	1. ----- ----- 가. ~ 하. (현행과 같음)
<신 설>	거. <u>경찰·소방공무원으로 20</u> <u>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경</u> <u>찰청장·소방청장으로 재</u> <u>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u> <u>한 사람. 이 경우 재직기</u> <u>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u> <u>법」 제25조를 준용한다.</u>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국립호국원 가. ~ 다. (생 략)	4.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경찰·소방공무원으로 <u>30</u> <u>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u> <u>으로서 사망한 사람(경찰</u>	라. ----- <u>10</u> <u>년</u> ----- ----- <u>사람.</u> -----

· 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 직한 사람에게 한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 은 「공무원연금법」 제25 조를 준용한다. 5.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1. ~ 4. (생략) 4의2. <u>제1항제4호라목의</u> 사람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 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으로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 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 (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 한 사람 5. (생략) ⑥·⑦ (생략)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 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 부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u>제1항제1호거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의</u>----- ----- ----- ----- ----- ----- 5.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 치 등) ① ----- ----- ----- -----.
--	--

